

식품 규격변동 (Application A1158-로즈메리(Rosemary) 추출물을 식품첨가물로 허용)

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위원회는 호주 뉴질랜드 법 1991의 92항에 근거하여 로즈메리(Rosemary) 추출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허가하는 개정사항을 알림.

[2] Schedule 8(식품첨가물 및 해당번호)의 [2.1] S8(식품첨가물 알파벳 순)에 로즈메리(Rosemary) 추출물 392을 추가

[2.2] S8(식품첨가물 번호 순)에  
392 로즈메리(Rosemary) 추출물 추가

[3] Schedule 15(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)에 아래와 같이 개정

사용조건		
식품 유형	최대 허용량	비고
물이 없는 식용유지류	50 mg/kg	어유와 해조오일에 한함
유화제(80% 오일 미만)	75 mg/kg	마가린 (고체 및 액체)에 한함
잼, 처트니, 관련 제품을 포함한 과일 및 채소 스프레드	50 mg/kg	견과류버터와 견과류 스프레드에 한함
아이싱 및 프로스팅	20 mg/kg	
곡류 및 으깬 곡물 가공품	50 mg/kg	곡물바, 아침식사용 바, 아침식사용 시리얼에 한함
밀가루 제품	10 mg/kg	파스타, 누들을 제외한 크래커, 프레첼, 프리터 등
비스킷, 케이크, 패스츰리	40 mg/kg	
전체 분쇄 또는 부분 육류, 가금류 및 수렵육가공품	15 mg/kg	지방함량이 10%보다 낮을 때, 건조 소시지 제외
	37.5mg/kg	지방함량이 10%보다 많을 때, 건조소시지 제외
건조육	150 mg/kg	
소시지 및 생고기가 포함된 소시지육, 가공되지 않은 식육	100 mg/kg	건조 소시지에 한함

식염 및 양념	40 mg/kg	
소스와 토핑 (마요네즈와 샐러드 드레싱 포함)	50 mg/kg	
음료 이외의 식품	50 mg/kg	가공처리한 견과류에 한함
	20mg/kg	전분 기반 스낵

시행일. 2019. 1. 23